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25507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박근용

변론 종결 2023. 1. 10.

판결 선고 2023. 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51,179원 및 그 중 273,709,116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2. 7. 2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2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3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채무를 신용보증기간 2018. 9. 21.부터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정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1)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와 책임경영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어 부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정인이 제2조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증기업 : (주) 소외 회사
2. 신용보증약정 : 2018. 9. 21.자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3. 보증원금(한도금액) : 이억칠천만 원
4. 보증(한도거래)기간 : 2018. 9. 21.부터 2019. 9. 20.까지

제2조(책임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기업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회생, 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명의대여, 사해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6. 제6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7.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1/2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신보의 사전동의

8.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등)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보는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D은 2019. 1. 14. 및 1. 22.경 2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15.에는 대표이사 사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사회에서 사임안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졌으며(다만 피고는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여 2019. 6. 18. 사임등기가 경료되었고, D은 2019. 6. 24.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합108504호로 '대표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은 2020. 10. 30. D의 승소로 판결이 이루어져 2020. 11. 24. 확정되어 D의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D의 사직서 제출, 이사회 개최 및 승인, D의 소송 제기 과정 등에서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통보를 한 사실도 없다.

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 9. 24.경 원금연체로 부실처리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0. 1. 21.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73,709,11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1,349,130원,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892,933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대보증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원고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되었고, 실질 경영주라고 할 수 있는 피고 역시 사내이사에서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 2019년 1월경부터 계속적으로 사의의 의사표시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름대로 D의 사직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직한 이유도 D의 사직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사회를 형해화하려는 목적(당시 3인의 이사였는데 피고의 사임으로 2인의 이사만 잔존하게 함)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책임경영약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 2019. 1. 14. 및 1. 22.에 각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2019. 1. 29.에는 D이 소외 회사의 설계업 면허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 2019. 4. 15. 이사회에서는 D의 사임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고 피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실,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피고와 D이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었던 사실, D은 피고와 상의없이 2019. 6. 24.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D이 소외 회사를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가급적 만류하려고 하였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에서 '대표자 사임'의 경우 원고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 사주인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하되 다만 대표자 사임 등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영업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전 동의(내지는 최소한 사전·사후 통보)를 얻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비록 대표자의 사임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까지는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D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또는 2019. 4. 15.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사임에 관한 표결이 이루어졌을 즈음에 사전·사후의 통보를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7호 또는 최소한 제8호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951,179원(= 대위변제금 273,709,116원 + 위약금 1,349,130원 + 채권보전조치비용 892,933원) 및 그 중 위 변제금 잔액 273,709,1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7. 26.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율에 따라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홍준

1) 소외 회사는 피고 및 피고의 부친인 소외 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인 것으로 보인다.